

책임편집인은 편집감독의 소홀로 발생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

연방대법원 1976년 12월 7일 판결

VIZR 272/75

민법 제 823 조

책임편집인은 발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편집 과정을 감독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해 생긴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사실개요>

콘크레트(Konkret) 지의 1972년 11월 16일자 사설에, 동지에 실린 바 있는 연방의회선거전과 관련된 『사회주의자 시장경제활동』이라는 광고에 대한 비평 기사를 게재했다. 그 사실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베트남지원단체의 주도하에 광고수익금을 하노이 소아과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기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프링거 바우어 회사(Springer, Bauer & Co.)의 재정보존 없이는 몸을 부지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네이팜 희생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보조할 경우, 슈뮈델 바우어(Schmuddel Bauer) 씨와 액셀(Axel) 씨는 무섭게 화를 낼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환자들이 도움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피고는 콘크레트 지의 사설란 책임 편집인이다. 원고인 바우어씨는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 피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상으로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법원은 바우어씨의 소송을 기각한 반면에 고등법원은 피고에게 2,000 마르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인정했다. 피고는 그에 불복, 상고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1. 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사설은 일반 독자들의 인식기준에서 볼 때 피상고인(1심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비판으로 문제가 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st Rspr; 비교: 연방대법원의 민사소송판례 42, 210, 220: 연방대법원, 1974년 6월 18일 판례-VI ZR 16/73=LM 기본법 5 조, Nr.36.36= NJW, 1974, m. w. Nachw.) 이러한 이유로서 모욕적인 비평은, 기본법 제 5 조 1 항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출판의 권리와 정치적인 논평에서의 이

형평의 원칙에 준해서 보면 적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더구나 정치적으로도 명백히 편파적인 비평을 하는 과실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피상고인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논쟁은 피상고인이 경제적으로 관련있는 신문사를 통하여 미국의 베트남 정책을 지지했고,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한 피상고인의 견해에 대해 상고인(1 심피고)이 공개적으로 논평하는 데서 발단되었다.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저소득층에게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적합하지 않다. 그 논쟁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특히 광고에서 인용된 바 있는 연방의회선거전을 통하여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인 의견대립에 있어서 언론은 정해진 논평범위에 주의하면서 논평해야 한다. 이러한 논평은 법적으로 과실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권위있는 연방대법원 최고심판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표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랄한 비평은 헌법상의 보장을 받지만 그것이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일 때는 위법이 된다. (연방대법원, 1960 년 5 월 17 일 판례-VIZR 90/59=LM 민법 823 조 Nr.5; 1971 년 5 월 25 일 VIZR 90/59=LM 민법 847 조 Nr. 42; 1974 년 6 월 18 일 -VIZR 16/73) 상고심에서는 그 모욕적인 비평이 원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했다. 그 비평이 피상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상고심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더이상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 만일 사실의 내용이 베트남의 네이팜 희생자들로의 의료품 반입에 대한 협조문제에 한정해서 피상고인을 비평한 것이었다면, 원고도 이 사실내용을 정당한 의견제시로 인정할 것이다. 그의 자금이 네이팜 희생자들의 의료품 보급에 사용될 경우 그는 「무섭게 화를 낼 것이다」라는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결국 모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비방을 했을 때, 기본법 제 1 조 및 제 5 조에 의거, 그러한 보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의미 없다 (연방헌법재판소 NJW1976, 1677 다음 페이지 이하 : 1680 다음 페이지 이하).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언론은 비평대상이 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언론자유를 요구할 수는 없다. 고의에 의한 비방적인 비평은 법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비교 : 연방대법원의 민사소송판례 45, 296, 310) .

2. 항소법원은 상고인이 비록 -이 문제는 항소법원도 충분히 참작한 바 있다-직접 집필하지도 않았고 또한 직접 편집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설의 게재로 인해 발생한 피상고인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1) 항소법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고인은 무엇보다도 편집인으로서 사실란의 책임을 맡고 있다. 간행요목에 적혀 있는 「책임편집인」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단지 형사상의 책임영역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비교, 1965 년 1 월 29 일 Hamburgisch 출판법 제 6, 8 19 조 2 항

Nr.1-GIBI 15).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민사상의 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출판법상의 제도와는 관계가 없다(연방대법원의 민사소송판례 3,270,275-Constanze I-;24, 200, 210 다음 페이지 이하; 연방대법원 1966 년 4 월 26 일 ?VIRZ 240/64=LM 민법 823 조 [Ai] Nr.29=NJW 1966, 1857; Löffler 출판법 2 판 I 권 14 장 Rdnr. 100; II 권 Rdnr. 30.vor 연방출판법 8 조 m. w. Nachw.). 반면에 상고인이 위임받은 편집상의 임무는 민사상의 책임에 결정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그에게 위임된 권한의 책임범위 내에서 잡지의 내용을 게재할 때에는 항상 타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고인은 다만-그의 고용계약상의 약정에 따라-그의 고용주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를 초월해서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로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한 위험이 있는 공표에 대해서도 책임의무가 있다. 편집인은 표제의 선택과 그것을 재검토하는 업무를 위임 받았으며, 따라서 주의의무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소홀히 했을 경우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비교; 연방대법원의 민사소송판례 3, 270, 275, Constanze I-; 24, 200, 211; 연방대법원 최고심판부의 1957 년 3 월 19 일; 1974 년 5 월 18 일 판례=Peter Ulmer 법조신문 1969, 163 다음 페이지 이하. m. w. Nachw.)

2) 상고인이 편집인으로서 그의 임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실의 게재를 중지하였거나 또는 중지시키기만 했더라도 그의 임무는 충실히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고인은 사전에 사실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책임편집인으로서 상고인의 지위는 사실 및 기사표제에 대해 그의 책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위임된 감시의무의 범위 내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형사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검토해 볼 때, 또한 상고인이 1973 년에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 처벌을 예방하고자 변호인 상담을 받은 결과, 게재중지를 요구하는 피상고인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에 대한 현저한 개연성을 그가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양지하기에 확실한 상황임에 불구하고 금방 사실을 읽어보고 재검토하지 않았던 이유를 변명할 수 없다. 또한, 그가 혹시 적법한 의사표명의 한계를 오해한 경우이더라도, 어쨌든 그는 그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 만일 피고가 기사의 재검토를 단념했다면, 공표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그에게 현저하게 부과된다. 상고인은 먼저 타인의 명예를 위협적으로 훼손케 할 만한 극한적인 침해는 아니더라도 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 한다. 그가 발행인으로부터 책임을 위임 받고서 편집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사실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이 편집인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인에게 위임된 기사내용을 검토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인 사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사전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상고인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야 만 사실에 대해 원래의 사실집필자 및 공동집필자와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상고인이 편집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과실을 인지했음이 분명할 경우, 그러한 침해에 대해 편집인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본 1966년 4월 26일 연방대법원의 최고심판부의 판례(VI ZR 240/64=a. a. O)는 이미 뚜렷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편집인이 부주의하게도 사실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에 상고인은 민사상의 책임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는 위 판결원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상고인이 알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당판사에 의해 확인될 경우, 상고심에서는 연방대법원의 민사소송판례에 있는 근거를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은 그가 어떠한 기사를 검토하는데 있어 완전히 태만했음이 틀림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상고인의 그러한 태만이 부주의에 의한 과실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한편 상고인의 주장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칙에 따라 타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금전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1) 언론사가 선거시에는 보편적으로 과장해서 비판 및 풍자 기사를 쓴다는 관례를 참작하더라도, 사실을 통하여 피상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항소법원은 상고심의 판결에서처럼 상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황을 손해배상액 확정에만 아니라 침해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도 고려했다(연방대법원 판결문 13 페이지 이하). 그러나 이 사건의 상황을 보면 금전상의 보상방법으로는 적절하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고인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논설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태만에 기인했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변경될 수 없다.

2)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과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2,000 마르크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상고인이 불복, 상고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있어 특히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 특별한 필요성때문에 정도에 따라 높은 액수의 배상금지불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고인은 이를 감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배상액수는 합의기능 및 보상기능 이외에도 더 많은 상징적인 기능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배상금액수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담당판사의 재량권에 속한다. 물론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민사상의 방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정은 배상액의 확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 한정해서 적절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상고인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